

<1 차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는데 있고, 산업재해예방 그리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업안전 및 보건기준의 확립 그리고 안전과 보건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 1)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전문 기술성
- 2) 복잡·다양성
- 3) 강행성·규정성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 1) 인명존중: 안전관리의 기본적인 목표는 인도주의이다.
- 2) 경영경제: 안전보건은 손실관리 차원의 기업경영 기법이다.
- 3) 사회적 신뢰: 안전한 직장은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게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 총칙
-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관리규정
- 유해·위험 예방 조치
- 근로자의 보건관리
- 감독과 명령
-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관련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시건설물, 설비 원재료 등에 의하거나 작업 그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중대재해**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유해·위험 예방 조치 중 “작업중지”**

-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취한 후 작업재개
- 근로 중 급박 위험시 대피하고 상급자에게 보고
- 작업중지를 어길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TOP**

- 재해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사용되는 기법
- 기술적, 조직적, 인적측면

***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의 보고**

- 사업주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걸린 사람이 발생한 때에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산업재해조사료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즉시 보고해야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방송업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소매업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보건업(단, 병원은 50인 이하일지라도 면제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 1차 위반시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만원
- 2차 위반시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만원
- 3차 위반시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 1차 위반시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만원
- 2차 위반시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

-3차 위반시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5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해야할 근로자 정기안전, 보건교육의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내용**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신규 채용시나 작업환경 변경시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

- 채용시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2시간 이상
- 건설 일용근로자는 4시간 이상

<2 차시> 사무직 근로자의 재해예방

1. 일반현황 및 업무 특성

*** 일반현황**

- 사무직 근로자는 변화하는 IT기술과 환경, 새로운 업무기술로 쫓아가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과도한 업무량 속에서 만성피로와 근골격계 질환, 거북목증후군 및 두통 등의 질병을 호소하고 있음.

- 사무직 근로자들은 근골격계질환, 감염성 질환의 교차감염, 교대근무, 직무스트레스, 장시간 노동, 폭언·성희롱 등의 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도 증가되는 추세임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사무직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함

조항	주요내용
제3조 (전도의 방지)	•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
제4조 (작업장의 청결)	•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관리
제7조 (채광 및 조명)	•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를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
제8조 (조도)	• 조정밀작업 750lux 이상, 보통작업 150lux 이상, 기타 75lux 이상
제79조 (휴게시설)	• 휴식시간에 이용하도록 휴게시설 설치
제82조 (구급용구)	•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갖추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전달
제67조 (공기정화 설비가동)	• 사무실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 설비 등을 적절히 가동
제657~662조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 근골격질환 예방 관리프로그램 실시
제663~666조 (중량물작업 특별조치)	• 취급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적정 배분
제669조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등의 개선대책 마련, 시행

- 기타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의료법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근로시간 및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제한할 수 있음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며,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여야 함

2. 사무직 근로자의 유해·위험 요인

- 작업환경 요인

1) 실내공기의 질

- 사무실의 오염물질 : 사무실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은 분진, 가스, 증기 등과 곰팡이, 세균,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임
- 호흡성 분진 : 사무실 공간에는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다양한 호흡성 분진이 존재하며 또한 근무시간 동안 켜져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로 인하여 공기가 건조해지고, 공기의 질이 나빠지며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 불충분한 조명

- 컴퓨터 작업을 주로 하는 사무실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작업환경 요인

- 1) 앉아서 하는 작업 - 의자에 장시간 앉아서 작업을 하므로 운동부족 및 다양한 건강문제가 발생됨
- 2) 컴퓨터 작업 - 반복 작업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 접촉스트레스, 정적인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요인으로 작용함

3) 장시간 근로 -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생식건강, 사고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건강문제 요인

1)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 사무직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 반복 작업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 접촉스트레스, 정적인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건강장해
- VDT 증후군 : 장시간 동안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작업을 할 때 생기는 각종 신체적, 정신적 건강장해를 말하며 장기간 VDT 작업으로 인하여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구부러지는 거북목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음

2) 만성피로

- 원인 질환 없이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현상으로 주요 원인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이며 휴식으로 회복되는 일반 피로와는 달리 휴식을 취해도 좋아지지 않고 피로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남

3) 직무스트레스

- 사무직 근로자들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무자동화, 전산환경에 새로운 업무를 익히고 쫓아가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스트레스는 불안을 유발시켜 복부통증, 현기증, 근육긴장과 두통, 집중력 감소 등의 신체·정서적 문제를 일으킴

<3 차시> 감정노동과 건강관리

1. 감정노동 관리방안 (회사 차원의 관리방안)

- 감정노동 관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
- 적정 서비스 기준 및 고객 응대 매뉴얼 등 “근로자 자기보호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
- 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장에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
-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직장문화를 조성
-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
- 근로자의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2. 감정노동 관리방안 (개인 차원의 관리방안)

- 명상
- 복식호흡법
- 근육이완법
-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 자신의 감정 털어놓기
- 자기 주장훈련
- 생활습관 개선
- 힘들 때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상사나 동료 만들기
-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기
- 규칙적 운동, 식생활 등 긍정적이고 올바른 생활습관 갖기
-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